

오수처리시설 설치
 정화조 변경 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신고인	①성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	②생년월일 203-83-00918	
	③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시스 빌딩		
설치장소	④건물연면적(㎡) 7,505.78 ㎡	⑤건물용도 지하철 역사(922공구)	
	⑥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305 (둔촌동 동북중고 앞)	⑦오수발생량(㎡/일) 또는 처리대상인원(명) 400인용	
시공 예정자	⑧상호(대표자) 대윤환경(주)	⑨등록번호 제 2016-2 호	
	⑩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총민로 52, 10층 제에이 1013호(문정동, 가든파이버웍스) (전화번호:02-512-3282)		
⑪착공예정일 년 월		⑫준공예정일 년 월	
⑬처리방법 및 개요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패탱크방법</p>			
⑭처리용량(㎡/일) 또는 처리대상인원(00명용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0인용</p>			
변경내용	⑮변경 전	⑯변경 후	

「하수도법」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201 년 월 일

신고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해당 시설 설계도서(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) 1부(설치신고에 한한다) 2.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(설치신고에 한한다) 3.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(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) 1부 4.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건축물대장 사본 1부	